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나6517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나651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소1250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 선고 2020. 11.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소12504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4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의 동생인 E은 'F'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조립 및 납품 등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컴퓨터 조립 및 수리 등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30.자로 공급자 'G B', 공급받는 자 'D C', 품목 '컴퓨터본체·수리', 공급가액 4,589,000원, 세액 458,9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다. C은 2018. 7. 10. 14:43 피고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자등록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5:00경 C에게 '공급가 4,589,000원, 부가세 458,900원, 합계 5,047,900원입니다. 품목은 무엇으로 할까요?'라는 내용과 함께 입금받을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0. 16:54경 '보내시는 분'을 'D'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47,900원을 입금하였다.

마. C은 같은 날 16:56경 피고에게 입금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위

나.~마.항과 같은 내용의 거래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컴퓨터 조립 및 납품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C와 피고 사이의 거래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입금한 것인데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C와 피고 사이의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컴퓨터 조립 및 납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6~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컴퓨터 조립 및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입금한 금원의 반환을 수차 독촉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7. 31. 및 2018. 8. 9. E을 통하여 원고가 입금한 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각 90,000원씩을 C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8. 10.부터 2018. 10. 10.까지 E을 통하여 16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600,000원을 C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2018. 8. 10.	100,000원
2018. 8. 13.	100,000원
2018. 8. 14.	100,000원
2018. 8. 16.	100,000원
2018. 8. 17.	100,000원
2018. 8. 20.	100,000원
2018. 8. 21.	100,000원

2018. 8. 10.	100,000원
2018. 8. 22.	100,000원
2018. 8. 23.	100,000원
2018. 8. 24.	100,000원
2018. 8. 27.	100,000원
2018. 8. 29.	100,000원
2018. 8. 30.	100,000원
2018. 8. 31.	100,000원
2018. 10. 8.	100,000원
2018. 10. 10.	100,000원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1)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다가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에는 원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어 원고가 입금한 금원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 5,047,900원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할 때 '보내시는 분'에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상호인 'D'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착오로 위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C은 부부관계로, C과 피고 사이에 거래대금 및 입금 계좌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 때로부터 약 2시간 후 원고가 위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금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가 컴퓨터 조립 및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입금된 돈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고 또는 E의 매장으로 C과 함께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 폭행 등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성립 및 이후 분쟁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C 명의 통장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거래상 입금 또는 송금 명의인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피고나 C, 또는 원고, E 중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입금 또는 송금된 돈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금원임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2) 나아가 원고와 C이 부부관계로, 계약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원고와 C 전원의 자력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와 C 또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명이나 입금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그 명의로 구매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청구나 수령 등 행위를 해왔고 관련자들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바, 이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의 불가분성에 관한 묵시적 특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불가분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나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채무자도 채권자 중 한 사람을 임의로 선택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및 그 효력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과 함께 입금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쌍방 모두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계약을 그 내용대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다가 ①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반환할 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180,000원을 우선 지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을 통해 2018. 7. 31. 및 2018. 8. 9. 이자조로 입금된 180,000원은 공제할 수 없고 이후 입금된 위 1,600,000원은 위 5,047,900원에서 공제할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가 거래대금 수수와 대가관계에 있는 컴퓨터 조립 및 납품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을 피고가 반환함으로써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가 2018. 8. 10.부터 2018. 10. 10.까지 E을 통하여 16회에 걸쳐 각 100,000원씩
합계 1,600,000원을 C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위 1,6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에 모두 충당되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3,447,900원(=5,047,900원-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44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정민

판사김병룡

판사이순형